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87 발의연월일: 2025. 6. 10.

발 의 자:허 영·박지원·김병기

박 정·장철민·김영환

김태선 • 위성곤 • 전재수

임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병대는 창군 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며 혁혁한 전공을 세워왔으나 유신 독재 정권 시절인 1973년 10월 10일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현행법(당시 명칭은 「군법회의법」)에서도 해병대와 관련한 군사법제도 규정들이 삭제된 바 있음.

그런데 그 뒤 실제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해병대는 변변한 장비도 제때 조달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합참에서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차별적 대우를 받아 온 것이 현실이며 심지어 엄연히 해병대를 지원하여 복무한 뒤 전역한 전역자들조차 육해공군 3군 체제라는 한계 때문에 병적에 해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등의 부당함을 겪어 왔던 것으로, 이에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사기 진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병대 위상 강화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옴.

이에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기 위한 여러 조치의 일환으로, 해병대의 병과를 신설하고, 해군과 해병대를 분리함으로써 해병대에 각 군과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0689호),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90호) 및 제10688호),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90호) 및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병대: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제8조제3항 중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各軍)이라 한다]"을 "해군, 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군"(各軍)이라 한다]"로, "각군 참모총장"을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임명하며,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를 "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지며, 해병대사령관은 재임기간 동안해병대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를 "가진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하며,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역되며, 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를 "전역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육군·해군·공군 참모차장 및 해병대부사령관

제29조제2항 본문 중 "각군 본부"를 "육군·해군·공군 본부 및 해병 대사령부(이하 "각군 본부"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 며,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 중 "본부, 해병대사령부"를 "본부"로 한다.

제53조의2제2항 중 "제19조제4항에 따라 전역되는 해병대사령관, 제21 조제3항"을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6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병과) ① 군인의 병과는 각	제5조(병과) ①
군별로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구분하되, 특수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해병대: 의무과, 법무과 및
	<u> 군종과</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현역정년) ① • ② (생	제8조(현역정년) ① · ② (현행
략)	과 같음)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3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의	
구조 개편, 직제 개편, 인력 조	
정 및 적체(積滯) 인력의 해소	
등 육군, <u>해군 및 공군[이하</u>	<u>해군, 공군 및 해병대</u>
"각군"(各軍)이라 한다]의 인력	[이하 "각군"(各軍)이라 한다]-
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에는 <u>각군 참모총장</u> (이하 "참	<u>육</u> 군·해군·공군 참모총장
모총장"이라 한다)의 제청을	<u>및 해병대사령관</u>
받아 영관급(領官級) 장교의 정	
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	
군별로 단축할 수 있다.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①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①
참모총장은 해당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	
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u>임명하며, 해병</u>	<u>임명한다</u> .
대사령관은 해병대 장성급 장	
교 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	
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	
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참모총장은 재임기간 동안	②
해당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	
교 중 최고의 서열을 <u>가지며,</u>	<u>가진다</u> .
해병대사령관은 재임기간 동안	
해병대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③ 참모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3
하며,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2	<u>한다</u>
<u>년으로 한다</u> . 다만, 전시·사변	
시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	
다.	
④ 참모총장은 그 직위에서 해	4
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합참의장으로 전직(轉	
職)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며, 해	<u>전역된다</u> .
병대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	
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 역된다.

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보직은 해당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청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각군 참모차장

- 2. · 3. (생략)
- ② ~ ④ (생 략)
- 제29조(장교진급 선발위원회) ① 지 (생 략)
 - ② 장교진급 선발위원회는 각 계급별로 <u>각군 본부</u>에 설치한 다. <u>다만</u>, 해병대는 해병대사령 부에 설치한다.
 - ③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위원은 진급 선발 대상자보다 상급자인 장교나 선임(先任)인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한

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①			
<u>1.</u> 육군·청	해군 • 공급	구 참도	<u> 근차장</u>
및 해병다]부사령관	<u> </u>	
2.・3. (현형	맹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김	같음)	
제29조(장교건	민급 선빌	L위원호	1) 1
(현행과 같	음)		
②			
	해군ㆍ공	궁군 본	<u>부 및</u>
해병대사령	부(이하	"각군	본부"
 라 한다)	. <단서	삭제>	
3			

다. <u>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u> --. <u><단서 삭제></u> <u>해병대사령부에 설치하는 장교</u> 진급 선발위원회의 위원은 해 <u>병대사령관이 임명한다.</u>

④ • ⑤ (생 략)

제38조(전역심사위원회) ① 제37 조 및 제39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나 임용권이 위임된 부대에 전역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 ③ (생 략) 제53조의2(명예전역) ① (생 략)

② 제19조제4항에 따라 전역되는 해병대사령관, 제21조제3항 또는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전역되는 사람으로서 현역정년 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 ⑥ (생 략)

제64조(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 <삭 제>의) 해군참모총장은 제8조제3 항, 제13조, 제20조, 제21조제1 항, 제22조제3항, 제25조, 제43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전역심사위원회) ①
<u>본부</u>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3조의2(명예전역)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21조제3항</u>
③ ~ ⑥ (현행과 같음)
∠ x l. = ¬1l \

조, 제49조의2, 제58조 및 제63 조에 규정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 한을 위임할 수 있다.